

2017-07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정웅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8
제2장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사이버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9
제2절 선행연구의 비교 검토	13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18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18
1. 조사 설계	18
2. 표본 설계	22
3. 설문 진행 및 데이터	23
제2절 분석 결과	25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25
2. 사이버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29
제4장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37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37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37

2. 사이버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39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40
제2절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산출	41
1. 기본 모형(Basic Model)	41
2. 표준 모형(Standard Model): 업무 손실의 고려	43
제3절 사이버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44
1.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44
2.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44

제5장 결론	48
---------------	-----------

참고문헌	54
-------------	-----------

부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 전자금융거래법	97



표 목 차

<표 1>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10
<표 2> 2016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1
<표 3> 5대 범질서 침해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결과(2016. 5~10월) ...	12
<표 4> 수사 업무량 관련 선행연구(1992-2013)	14
<표 5> 수사 업무량 관련 선행연구(2014년 이후)	16
<표 6> 사이버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19
<표 7>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1월 현재)	25
<표 8> 사이버사건(표본)의 기초통계	28
<표 9> 사이버사건 세부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30
<표 10> 반려사건 소요시간의 비교	34
<표 11> 사이버사건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	34
<표 12> 사이버팀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 시간(2016년)	43
<표 13> 사이버팀의 반려사건 비율	45
<표 14> 경제팀의 반려사건 비율	46



그림 목 차

<그림 1>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10
<그림 2> 사이버사건 세부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32
<그림 3> 사이버사건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3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모바일환경과 온라인거래의 확대 속에 사이버범죄 발생이 2014년 11만 109건에서 2015년 14만 4679건으로 31.4% 급증하고, 지난 2016년에도 다시 15만 3075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 수법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이 융합되어 더욱 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를 볼 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하 사이버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4년 경찰청 내 사이버안전국이 신설되었음에 비해,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계·과 단위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수사과 내의 사이버팀 또는 수사요원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1인당 업무량은 타 수사팀 대비 과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¹⁾

그에 따라 사이버 치안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인력 증원 조치 또는 사이버수사팀 정식 직제화를 통한 사이버수사 여건 개선이 요구 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수사관 1

1) 2016년 상반기 기준, 사이버팀 1인당 접수건수는 경제팀 62.5건 대비 약 2.1배 높은 129.1건, 보유건수는 경제팀 16.8건 대비 약 1.8배 높은 30.6건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6년 상반기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업무량분석”, 2016. 7.

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사건들 중에서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처리한 사이버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서의 사이버팀 및 여기서 처리한 사이버범죄 사건에 한정되며, 그밖에 지방청 사이버수사팀 등 지방청 단위 이상에서 직접 다루어진 사건은 제외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사이버범죄 발생 추세 및 업무량 분석과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제3장에서 조사 설계 및 설문을 통한 사이버범죄 수사 프로세스 및 세부 업무량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4장에는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규모 및 적정 업무량 추정하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사이버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사이버범죄의 발생 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에 15만 5366건에서 2014년 11만 109건으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다시 14만 4679건으로 급증하고(전년 대비 31.4% 증가), 지난 2016년에 15만 3075건으로 늘어나(전년 대비 5.8% 증가), 그 발생규모가 점차 2013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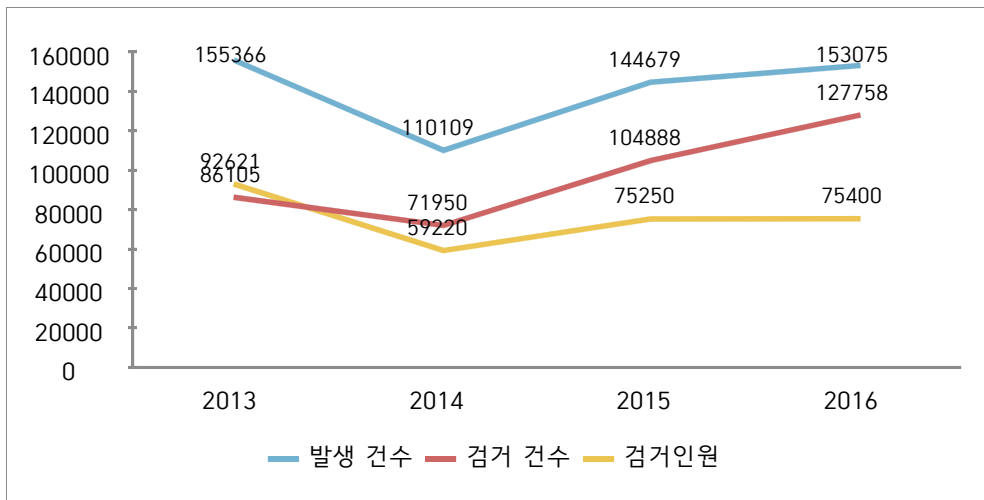
한편 2016년도의 경우 사이버범죄가 총 15만 3075건 발생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12만 7758건을 검거하였다(검거율 83.5%). 이는 지난 2015년 총 14만 4679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10만 4888건을 검거(검거율 72.5%)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검거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11.0%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인원
2013	155,366	86,105	92,621
2014	110,109	71,950	59,220
2015	144,679	104,888	75,250
2016	153,075	127,758	75,400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현황(2011-2016)”, 2017. 1.

〈그림 1〉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현황(2011-2016)”, 2017. 1.

지난 2016년 사이버범죄의 발생유형을 보면 총 15만 3075건 중에서 인터넷사기 및 저작권침해 등의 죄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12만 1867건으로 가장 많고(전체의 79.6%), 다음으로 사이버 도박 및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죄종을 위주로 한 불법콘텐츠 범죄가 2만 8438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18.6%).

반면, 해킹, DDoS 등 사이버범죄 위협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연간 27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이버범죄 중 극히 적은 비중(전체의 1.8%)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범죄 유형을 보면 인터넷사기가 10만 369건으로 총 사이버범죄 (15만 3075건)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전체의 65.6%). 그 다음으로는 명예훼손·모욕(1만 4908건), 사이버 도박(9538건), 저작권침해(9796건), 사이버 금융범죄(6721건) 등이 사이버범죄의 주종을 이루었다. 해킹(1847건), DDoS 등 서비스거부공격(192건), 악성프로그램(137건)은 매우 적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2016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유형 구분	총 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소계	해킹	DDoS 등	악성 프로 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발생(건)	153,075	2,770	1,847	192	137	594	28,438	3,777	9,538	14,908	56	159
검거(건)	127,758	1,047	537	164	98	248	23,539	3,435	9,394	10,539	53	118
검거인원	75,400	1,261	615	74	206	366	31,288	2,817	13,702	14,545	40	164
유 형 구 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소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발 생(건)	121,867	100,369	6,721	2,410	9,796	2,571						
검 거(건)	103,172	89,364	4,034	2,125	5,616	2,033						
검거인원	42,871	28,595	4,207	663	8,037	1,369						

주: 1) 2013년까지는 사이버범죄 통계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범죄’로만 구분 하였으나, 다양해진 사이버범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등 세 유형으로 구분.

2) 2015년에는 2015. 7월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스팸메일 유형을 삭제함.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6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017. 1.

경찰은 201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해 앞서 보듯이 약 83.5%의 검거율 실적을 보인 한편으로(<표 1>), 특히 5~10월까지 6개월간에 ‘5대 법질서 침해범죄’에 대한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1만 9594건(2만 2578명)을 검거하였다.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역시 인터넷사기가 전체 검거 건수의 58%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사이버도박 25%, (아동) 음란물 8%, 금융사기 7%, 개인정보침해 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5대 법질서 침해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결과(2016. 5~10월)

구분	계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아동) 음란물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건	19,594	11,451(58%)	4,899(25%)	1,515(8%)	1,331(7%)	398(2%)
명(구속)	22,578(788)	12,575(411)	5,981(244)	1,713(24)	1,646(65)	663(44)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결과”, 2016. 11.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효과로 경찰은 2016년 1~10월간 4만 4592명의 사이버범죄사범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의 3만 9916명 대비 4676명(12%) 증가된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하고, 탈세혐의자 642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는 2015년 특별단속 시 몰수·압수액 70억3천만 원, 국세청 통보 169명 보다 각각 293%, 280% 증가한 것이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수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에서 지난 2015년 2만 429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6년간 연평균 28.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만 48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 8705건에 비해서 32.9% 증가하였고, 이러한 실적은 이

미 2015년의 총 분석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전문인력의 증원²⁾, 첨단장비 확보와 분석기법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선행연구의 비교 검토

경찰 수사기능의 업무량 추정과 적정 인력규모 산출 등 업무량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1990년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찰관서 형사과 및 조사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992)가 있었다.

이후 형소법 개정(2011)과 변화된 수사조직 등 수사 환경을 반영하여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2010년대에 들어서는 치안정책연구소가 과거 조사계 조직에서 발전한 일선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경제팀 적정 업무량 연구(2012)를 진행하였으며,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 출범에 앞서서는 신설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업무모형(인력표준안) 연구(2013)도 진행하였다(<표 4>).

2014년 이후에는 성폭력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구(2014)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일선 경찰서와 지방청 수사대를 포괄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 보이스피싱 연구(2015) 등이 수행되었다(<표 5>).

먼저 <표 4>에서 보듯이 2012년 경찰서 경제팀 연구는 KDI의 연구

2) 2015년도 디지털 증거분석관 1인당 분석 건수를 보면, 총 2만 4295건에 대해 61명의 분석관이 분석업무를 담당하여 1인당 평균 40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청은 본청과 달리 현장수사지원 분석업무 집중하여 1인당 평균 분석 건수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고(지방청 평균, 2014년 301건→2015년 496건), 그중에서도 충남청(913건), 대구청(777건), 인천청(748건)은 전체 평균 266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 현장 대응역량 강화”, 2016.

(1992)와 비교할 때, 분석범위가 수사기능 중 경제팀(과거 조사계) 업무에만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연구방법에서 KDI의 소수 실무자 면담 조사 방식과는 달리 전국 경찰서 경제팀의 접수 사건 전체(정식접수 사건 외에, 임시접수 후 상담 반려된 사건까지 포함)를 기초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업무량 추정결과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사건 유형별 사건 비율 및 전체 11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추정하고(정식접수사건 10개 유형 및 상담반려사건 1개 유형)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제팀 적정 필요인원을 산출하였다.

〈표 4〉 수사 업무량 관련 선행연구(1992-2013)

구분	KDI, 용역연구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 연구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팀 연구 (2013)
조사대상	형사과 형사, 조사계 조사요원	전국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서울 관악서 시범전담팀 및 형사팀
연구방법	관계 부서 수사관 면담	설문조사 · 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 통계분석
사건유형	형사 및 조사 2가지만 구분	경제범죄 11개 유형 (사기, 횡령 등)	성폭범죄 12개 유형 (강제추행, 강간 등)
건당평균 처리시간	외근형사: 40시간 조사요원: 25시간	정식접수사건: 21.8시간 상담반려사건: 47 분	강력팀: 28.8시간 전담팀: 17.4시간

자료: 주학중 편(1992);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2; 2013)

2013년에는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전담팀 설치 및 전국적인 확대를 준비하면서 서울 관악경찰서의 시범 전담팀과 동 경찰서 내 기존 형사과를 대상으로 수사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시범관서 연구라는 특성 때문에 조사 대상이 1개 표본 경찰서에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시범관서라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형사팀)와 신설 부서(시범 전담팀)의 성폭력사건 수사 업무를 비교하여 그 업무량을 추정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 전담팀이 피해자 보호 및 증거분석에서 우수한 업무 모형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표 5>에서 보듯이 2014년에 전국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여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앞선 경제팀 및 성폭력 전담팀 연구와 같이 사건 유형을 구분하되 피해자 조사라는 원스톱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반인, 아동, 장애인, 장애아동, 비(非) 녹화 조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조사 대상 유형별로 조사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대상의 연구에서도 사건 유형을 구분하여 관서별(지방청, 경찰서), 보험종목별(상해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세분하여 각 유형별 조사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한편 2014년 이후 진행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 보이스피싱 연구 등에서는 기존의 수사 업무량 분석 외에,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착안점 도출을 위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원스톱 연구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업무환경)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 인프라, 근무 형태, 원스톱센터 내부 타 지원부서 및 원스톱센터 외부 경찰기능과의 관계, 업무수행 중 정상적 업무손실을 분석하였다.

〈표 5〉 수사 업무량 관련 선행연구(2014년 이후)

구분	치안정책연구소 원스톱 연구 (2014a)	치안정책연구소 보험사기 연구 (2014b)	치안정책연구소 보이스피싱 연구(2015)
조사대상	전국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여경 100명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495명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전국 경찰서 지능팀 361명
연구방법	수사실무지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수사실무지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수사실무지면담, 설문조사·통계분석
사건유형	피해자조사 5개 유형 (이동, 비녹화 등)	수사관서별(지수대, 지능팀), 보험종류별, 보험종목별	단일 최종 사건으로서 세부 유형 없음
건당평균 처리시간	-일반인 : 670분 -아 동 : 716분 -장애자 : 733분 -장애아동 : 734분 -비녹화조사 : 679분	- 경찰서 지능팀 393시간 지방청 지수대 1,383시간 - 생명보험 528시간 손해보험 314시간 사회보험 391시간 다중보험 744시간	170.58시간
수사 착안점	업무환경과 착안점 : -피해자 조사 인프라 -근무 형태 -원스톱 내 지원기능 -원스톱 외부 경찰기능 -업무 손실(교육·연가) -치유 프로그램	분석 요소와 착안점 : -정보협력 -유관기관 수사지원 -유형별 수사기법개발 -증거분석 전문성 확보 -조사시설 개선 -법규 정비	분석 요소와 착안점 : -전담수사 인력 증원 -외근 전담부서 확충 -국제공조 강화 -수사 인프라 개선

자료: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4a; 2014b; 2015).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경우에는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요소로서 기관협력, 수사기법, 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 등을 설정하고, 구체

적인 수사 착안점으로서 범죄정보 filtering(정보협력), 유관기관 수사지원, 유형별 대응(수사기법개발), 증거분석에서의 역량 제고(전문성 확보), 사건조사에서의 물적 인프라 확충(시설개선), 적용법조에 대한 명확화(법규정비) 등 법제 개선을 다루었다.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설계는 앞선 경제팀 및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2014a)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b) 등에서의 같이 사건의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의 현장 업무 흐름 즉 수사 프로세스 시각에 기초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사이버팀 수사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서 사이버팀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수사 프로세스 상에서 업무 범주는 일선 사이버팀 수사관에 대한 면담과 수사 업무 실사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크게 ① 초기 수사 업무, ② 본 수사 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① 초기 수사 업무는 첩보 업무와 사건상담 업무를 포괄한다.

초기 수사 중에서도 첩보 단계의 업무 내용에서는 사건의 수사개시(내사착수 또는 정식접수) 前 탐문활동, 첩보수집·첩보분석 활동,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등이 포함된다.

〈표 6〉 사이버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내용	조사 목적	
초기 수사	첩보	- 탐문, 첩보수집 활동 - 첩보분석 및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업무량 (시간) 추정	
	사건 상담	- 정식접수 전 민원상담 - 결과보고 등 서류작업	"	
본 수사	관계 자 조사	피의자	- 직접 범행 혐의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신문조서 작성·정리 등)	"
		피해자	- 피해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참고인	- 직접 증거물 보안을 위한 채증 및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내근) 자료요청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영장신청 등 수사자료 수집 前 서류작업	"	
	(내근) 통신수사	- IP, 통신(SNS·이메일 등), 사이트 추적	"	
	(내근) 자료분석	- 확보된 통신자료 등 수사자료 분석 - 수사보고 등 서류작업	"	
	(외근) 현장출동	- 출동 준비(영장신청, 포렌식 장비 등) - 현장 이동, 디지털 증거물 확보 - 기타 채증(CCTV 열람, 목격자·참고인 탐문)	"	
	(외근) 신병확보	- 구속영장 등 신병확보 前 서류작업 - 휴대폰 위치추적, 잠복, 체포	"	
	(내근) 디지털 증거분석	- 자체 분석 - 외부 의뢰 -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서류작업	"	
	수사 지휘	-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 외근 시 동행	"	
수사 마무리	서류 정리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작성 - 송치 전 수사서류 최종 검토·정리	"	
업무 손실	교육 연가	- 수사 중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실시 - 정상적 업무손실 규모의 추정	적정 업무량 재산정	
계			총 (시간)	

사건상담 업무에는 e-CRM(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즉일 방문에 의한 상담 등 민원상담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서류작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② 본 수사 업무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 관계자조사(내·외근)
- 자료요청(내근)
- 통신수사(내근)
- 수사자료 분석(내근)
- 현장출동(외근)
- 피의자 신병확보(외근)
- 디지털 증거분석(내근)
- 수사지휘(내·외근)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관계자조사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업무 외에도 조사준비(출석요청 등) 업무, 조사과정 및 조사 후 서류작업(조서작성·정리 등) 시간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이버사건 수사에서의 관계자 조사업무가 경제팀이나 형사팀 등 타 수사기능과 달리 단지 내근 조사 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업무 범주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사이버사건의 특성 상 피의자가 불상인 경우가 많아, 사이버사건의 관계자 조사업무는 단지 경찰관서 조사실에서의 대면 조사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관계자 조사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온라인 상의 추적활동, 오프라인 상의 외근 추적활동 등을 관계자 조사업무에 포함하면 이는 본 수사 단계에서의 다른 수사 활동 범주와 중첩되고

아울러 그 업무량(시간) 또한 경제팀 등 타 수사기능에 비해 매우 커질 수 있다.

자료요청 업무는 통신자료 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압수수색 영장(금융거래정보용 포함) 신청 등 수사자료 수집 前 서류업무가 포함된다.

통신수사는 기관간 공문 송수신, SNS·인터넷IP 추적, 전화통화 등 통신 추적수사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자료분석은 앞선 요청자료·통신자료 등으로부터 확보된 수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사보고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요청, 통신수사, 수사자료 분석 등이 내근 업무라고 한다면, 현장출동 및 피의자 신병확보 활동은 사이버 수사 업무 중 외근 업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장출동은 현장 진출 전 압수장비 정비 등 출동준비, 이후 사건 현장 이동(왕복)과 현장에서의 디지털 증거 획득 등 현장증거물 확보 활동, 그 외에 기타 외근(현장CCTV 열람과 목격자·참고인 탐문 등)을 통한 증거수집 업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외근 업무에서의 신병확보 활동은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前 서류작업, 현장에서의 휴대폰 위치추적·잠복·체포 등을 주 업무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 증거분석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분석 작업, 증거물을 지방청 등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의뢰 및 증거물 이송 작업, 자체 분석 또는 분석 의뢰 후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작성 등 서류작업이 포함된다.

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수사지휘는 팀장에 의한 각종 수사서류의 검토, 수사방향의 제시, 수사관 외근 시 동행 등 내·외근 업무로 이루어진다.

③ 수사 마무리 업무는 수사결과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사전 송치 전 수사서류의 최종 검토 및 정리 업무를 포함한다.

일선 경찰서의 현장 업무 흐름을 토대로 구축된 사이버 수사 업무의 조사 설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팀 업무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사이버팀 수사 업무가 일견 민원사건에 대한 사이버 상의 내근 조사에 한정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수사 프로세스에서,

① 고소고발, 진정 등 민원사건 조사 외에도 인지사건의 경우 첩보활동에서도 출발하는 긴 수사 업무 단계를 포괄하고,

② 온라인(사이버)수사 외에 오프라인 수사를 포괄하는 폭 넓은 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내근(조사) 외에도,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위한 현장출동과 디지털 증거물 분석, 피의자에 대한 외근 추적수사 등 깊이 있는 수사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각 세부 업무들의 업무량 크기를 떠나 적어도 그 업무 구조의 틀에서 볼 때, 조사 설계 <표 5>를 통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에서 매우 방대하다.

한편 사이버팀 수사 업무량 분석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수사 중 불가피하게 실시된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수사 업무의 정상적 손실 규모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2. 표본 설계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에 접수되는 사건은 크게 임시접수 후 상담과정

을 거쳐 반려되는 상담반려사건과 정식으로 접수되어 관계자조사와 증거수집, 송치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긴 업무처리단계 거치는 정식접수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사이버팀 사건이 정식 접수의 여부에 따라, 그 처리시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반려사건과 정식접수사건으로 나누어지는바, 표본설계에서 우선 표본추출방법(sampling method)은 위의 두 사건집단이 이질적인 점을 고려하여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 중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택하였다.

층화추출 이후 집락을 추출단위로 하는 군집표본추출방법(cluster sampling)을 택하되, 특히 군집 간 동질성(homogeneity)과 군집 내 사건요소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확보된다고 보이므로³⁾ 다단계 추출(multistage sampling)에 의해 각 지방청 하의 경찰서를 추출단위로 정하였다.

또한 단계별 경찰서 추출과 추출된 경찰서 단위 내에서 사건 추출은 서울·수도권 대도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집락의 크기(발생사건 수)가 불균등하므로, 군집추출 중에 집락크기에 따른 확률비례추출법(sampling with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이용하였다.

3. 설문 진행 및 데이터

앞선 조사 설계를 토대로 개발·작성된 설문과 표본 설계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추출된 46개 경찰서 사이버팀 팀원(팀장 제외)을 대상으로 본청 사이버수사과의 협조를 통해 약 2주간(2017. 1. 12 ~ 1. 25)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진행은 표본 설계를 통해 17개 지방청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

3) 전국 경찰서들은 어느 경찰서이든 대체로 여러 유형의 사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군집 내부적으로는 사건요소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확보되고, 그런 점에서 군집표본추출단위로서 경찰서는 상호간에 대외적으로 동질적 성격(homogeneity)을 갖는다.

나,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경우 지역별·경찰서별로 사건발생 건수의 규모가 달라, 우선 서울 수도권 및 부산 등 지역관서에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 관서를 할당하고, 각 지방청 내에서도 사건발생과 1인당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사건이 집중된 경찰관서의 사이버팀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사이버사건 수사관이 스스로 설문지를 완성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이었으나, 여러 담당 사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수사 송치한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응답토록 제한함으로써 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시의성을 높이는 한편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에 대한 기억편견(memory bias)의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전국 범위의 설문 조사 진행에 따라, 설문 대상 중에는 최근 수사 담당자 인사이동 등 근무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건의 처리 내역을 확정하여 기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송부된 설문지 중 총 302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는 답지 기입 착오로 인해 이상점(outlier)이 현출된 경우, 불성실 답변 등 업무량 측정에 사용되기에 어려운 사례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 설문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응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건 자체에 대해 응답이 곤란하거나 변수 항목 중 이질성이 우려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3건을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 외에, 사이버사건 업무 규모(사건처리 소요시간), 적정 업무량(건수) 및 적정 필요인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유형별 사이버사건 발생 추이 및 사이버팀 정·현원 관련 통계자료 등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별도로 제공한 2011-2016년간의 사건처리 실적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수사 업무 프로세스에 기초한 사이버팀 수사관의 직무분석 및 그 직무에 따른 업무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설문에 응한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46개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유효응답자, 283명)에 대하여 계급, 연령, 사이버팀 근무경력, 경찰관으로서의 총 재직연수, 입직경로 등을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듯이 우선 응답 수사관들의 소속 지방청을 보면 서울(15.9%), 경기남부(19.1%), 경기북부(9.9%), 부산(8.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부산 및 5대 광역시와 경기도 남·북부 등 9개 지역관서의 경우 전체 응답수사관 중 76.3%으로 3/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당초 표본 설계에서 지역별·관서별 범죄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관서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이다.

수사관들의 연령대는 20대 11명(3.9%), 30대 169명(59.7%), 40대 92명(32.5%), 50대 11명(3.9%)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1월 현재)

변수		빈도 (N=283)	%
소속	서울	45	15.9
	부산	24	8.5
	대구	12	4.2
	인천	17	6.0
	광주	14	4.9
	대전	10	3.5
	울산	12	4.2

	경기북부	28	9.9
	경기남부	54	19.1
	강원	7	2.5
	충북	9	3.2
	충남	10	3.5
	전북	11	3.9
	전남	9	3.2
	경북	6	2.1
	경남	11	3.9
	제주	4	1.4
연령	20대	11	3.9
	30대	169	59.7
	40대	92	32.5
	50대	11	3.9
계급	순경	24	8.5
	경장	118	41.7
	경사	91	32.2
	경위	50	17.7
재직연수	5년미만	92	32.5
	5년이상-10년미만	88	31.1
	10년이상-15년미만	48	17.0
	15년이상	55	19.4
부서경력	1년미만	75	26.5
	1이상-2년미만	66	23.3
	2이상-3년미만	53	18.7
	3년이상	89	31.4

수사관들의 계급은 순경이 가장 적은 24명(8.5%)인 반면, 경장이 가장 많은 118명(41.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사 91명(32.2%), 경위가 50명(17.7%)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팀원 구성에서 경장과 경사 계급이 전체의 약 3/4에 이르러(73.9%) 이들 두 계급이 사이버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본 연구의 사이버팀 조사 대상에서 팀장은 제외).

경찰관으로서의 재직연수를 보면 우선 5년 미만이 가장 많은 92명(3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88명(31.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8명(17.0%)을 차지했으며, 15년 이상 재직자는 55명(19.4%)으로 나타나, 10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의 약 2/3인 63.6%에 달하였다.

사이버팀 근무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이 75명(26.5%), 1년 이상~2년 미만이 66명(23.3%), 2년 이상~3년 미만이 53명(18.7%),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89명(31.4%)으로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31.4%)을 차지했으나, 2년 미만의 수사관도 약 절반을 차지(49.8%)하고 있다. 타 수사기능에 대비해 비교적 짧은 수사조직 연혁과 수사 전문성에서 오는 애로⁴⁾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팀의 경력기간 역시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일선 사이버팀 수사관, 팀장 제외) 警察像은 2017년 1월 현재 경찰 입직 후 10년 미만, 사이버팀에 근무한지는 2년 미만된 30대의 경장이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283건)들의 수사 단서를 보면 <표 8>에서 보듯이 진정·투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184건(65.0%)이고, 다음으로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 60건(2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선 사이버사건은 대부분 진정·투서에 의한 사건(65.0%), 그밖에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21.2%), 신고 사건(8.1%) 등이고, 나머지 수사관의 첩보활동에 의한 인지사건(4.2%)은 그 비중이 매우 작다.

수사관의 인지사건 또는 피의자가 특정된 민원사건과 달리, 피의자가 특정되지 못한 채 진정, 고소·고발,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사이버상의 발생사건은 대체적으로 피의자 추적·검거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비대면 첨단통신과 금융거래의 신속성을 이용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발생사건에 대한 수사는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사이버분석 전문 입직자가 아닌 일반 수사관들의 경우, 사이버팀 장기 근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수사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력을 쌓아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표 8〉 사이버사건(표본)의 기초통계

변수		빈도 (N=283)	%
단서	탐문·첩보	12	4.2
	신고	23	8.1
	고소·고발	60	21.2
	진정·투서	184	65.0
	합계	279	98.6
	결측	4	1.4
수사관수(명)	1	183	64.7
	2	53	18.7
	3	19	6.7
	4	14	4.9
	5	2	.7
	6	2	.7
	7	3	1.1
	8	5	1.8
	9	1	.4
	합계	282	99.6
	결측	1	.4
수사기간	1개월이내	16	5.7
	2개월이내	64	22.6
	3개월이내	123	43.5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63	22.3
	6개월초과	16	5.7
	합계	282	99.6
	결측	1	.4

사건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 수를 보면, 1인에 단독 배당된 경우가 가장 많은 183건(64.7%)이었으나, 2명이 수사를 진행한 경우도 53건(18.7%)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 이상 최대 9명까지 투입되어 복수의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약 1/3을 넘는 35%로 나타나 사이버사건이 다른 기능의 사건에 비해서 수사요원간의 협력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처리에 소요된 수사기간은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16건(5.7%),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64건(22.6%),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123건(43.5%)으로 나타나, 수사 기한 제도에 따라 대체로 3개월 이내에서 종결되고 있다.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은 63건(22.3%),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은 16건(5.7%)에 불과하다.⁵⁾

2. 사이버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사이버사건 1건당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 프로세스(정식접수사건 기준)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첩보활동에 131.66분, 민원상담에 60.90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본 수사 단계에서는 관계자 조사 즉 피의자조사에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 157.4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수사 단계에서 내근 업무를 보면 통신자료요청에 74.46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57.32분, 영장신청에 85.87분, 통신수사에 139.73분, 수사자료분석에 132.02분, 수사보고서작성에 132.81분 등으로 추정되었다.⁶⁾

5) 주로 지능팀이 담당하는 보험범죄 사건 수사기간은 1개월 이내 3.4%, 2개월 이내 13.8%, 3개월 이내가 23.5%에 불과한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이 28.7%,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30.6% 등으로 나타난다. 정웅(2014b: 18).

6)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다수의 관계자 조사 및 각종 수사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하는 본 수사 단계의 경우, 본인 외에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타 수사관들의 수사 시간 전체를 구하여 업무량(시간) 누락 위험을 피하였다.

〈표 9〉 사이버사건 세부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첩보	247	0	960	131.66	234.531
민원상담	270	0	150	60.90	45.185
피의자조사	277	0	960	250.72	197.233
참고인조사	282	0	600	122.34	172.942
피해자조사	282	0	600	157.45	165.481
통신자료요청	277	0	480	74.46	68.734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269	0	360	57.32	65.354
영장신청	276	0	480	85.87	70.455
통신수사	264	0	1440	139.73	125.154
자료분석	272	0	900	132.02	126.354
수사보고서작성	274	0	600	132.81	96.129
출동준비	282	0	600	91.17	149.782
현장출동	280	0	1200	121.50	205.562
기타외근증거수집	269	0	600	169.74	200.280
신병확보(영장신청)	279	0	480	77.31	100.665
신병확보(추적수사)	253	0	960	111.34	170.566
디지털증거분석(자체)	281	0	600	42.60	91.073
디지털증거분석(의뢰)	270	0	240	30.56	68.755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282	0	600	45.32	86.765
수사지휘	272	0	240	75.70	66.418
서류정리	276	30	600	185.98	96.375
유효수 (목록별)	177				
합계				2,296.5	

본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 외근 업무로서, 출동준비 91.17분, 현장출동 및 증거물 확보 121.50분, 기타외근증거수집(CCTV 열람 · 참고인 탐문 등) 169.74분이 소요되고, 신병확보를 위한 영장신청 및 외근추적수사

(휴대폰 위치추적·잠복·체포 등)에 각각 77.31분, 111.34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디지털증거분석(자체)이 42.60분 소요되고, 내·외근이 혼합된 팀장의 수사지휘가 75.70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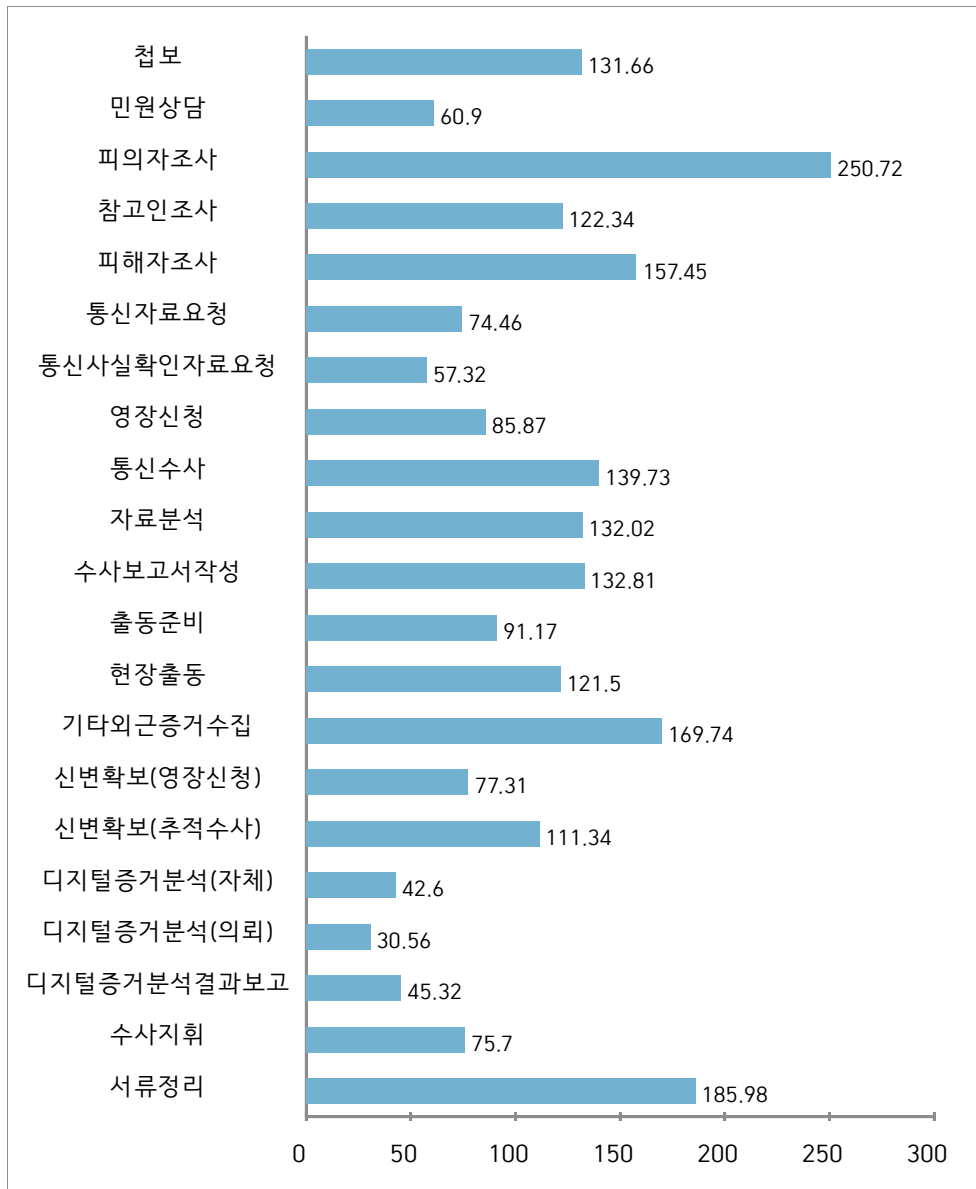
끝으로 수사 마무리 업무로서 송치 전 서류정리에 185.98분이 걸려 사건 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사이버팀 수사 업무 가운데 각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림 2>에서 보듯이 관계자조사 중 피의자조사 250.72분이었으며, 다음으로 송치 전 서류정리가 185.98분, 기타외근증거수집(CCTV 열람·참고인 탐문 등) 169.74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업무 가운데 관계자조사 업무량을 보면 피의자조사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 157.45분 등으로서 특히 피의자와 참고인조사 업무량이 다른 수사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2년 경제팀 연구에서는 피의자조사에 225.0분, 참고인조사 62.2분, 피해자조사 197.4분 등으로 추정된바 있다.⁷⁾

7) 다른 예로,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에서는 피의자조사 148.8분, 참고인조사 26.0분, 피해자조사 92.4분 등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2〉 사이버사건 세부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사이버수사의 특성상 대부분 사건이 초기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조사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

팀 또는 형사팀 등에서 진행하는 ‘조사실 내에서의 특정 피의자 대면 조사’와 달리, 본 수사 단계에서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온라인(사이버) 그리고 오프라인(사무실 및 현장) 상의 피의자 추적수사 활동 업무가 피의자 조사 업무(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포괄(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그리고 내근 및 외근 수사활동을 포괄하면서 이처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활동이 폭넓게 진행되는 것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처럼 관계자 조사활동은 이후 단계에서의 통신수사, 자료분석, 외근 증거수집, 추적수사 등에서의 업무와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체 업무량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부 업무량을 총합한 전체 업무량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96.5분으로 나타났으나, 단순 총합 시간에서 위의 관계자 조사 시간(530.51분=피의자조사 250.72분 + 참고인조사 122.34분 + 피해자조사 157.45분)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 수사기능에서와 같이 사이버팀도 관계자조사 시간이 분명 현존하지만, 이것이 다른 본 수사 단계에서의 세부업무들과 중첩된다고 보고 관계자 조사시간을 단순 총합 시간에서 차감하면, 사건 당 평균 수사 소요시간은 1765.99분(=2,296.5-530.51)으로 조정된다(정식접수사건 기준).

한편 사이버팀의 임시접수 후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표 10>에서 보듯이 건당 평균 70.02분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 경제팀 연구에서 경제팀장의 반려사건에 대한 상담처리 소요시간이 46.6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이버팀의 상담처리 시간이 다소 큰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8) 단, 2012년 경제팀 연구에서 반려사건에 대한 상담처리 소요시간(46.6분) 측정은 팀원이 아닌 팀장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으며, 사이버팀 조사에서와 달리 상담 후 민원 처리결과에 ‘서류 작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팀의 반려사건 업무량(70.02분)에 비해 과소평가된 부

〈표 10〉 반려사건 소요시간의 비교

단위: 분(分)

수사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사이버팀	274	5	240	70.02	35.328
경제팀	68	20	120	46.6	21.132

주: 위 경제팀 연구의 최초 결과물은 치안정책연구소 2012년 연구보고서임.

자료: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49쪽.

사이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표 11>에서 보듯이 사이버음란물 유형이 가장 큰 2690.56분이 소요되고, 기타 유형에서 2026.03분, 사이버도박 1905.0분, 인터넷사기 1850.72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이버사건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사건유형	세부유형	평균	N	SD
정통망침해	해킹	1483.5260	6	1082.43934
	서비스거부공격	840.0000	1	.
	합계	1391.5937	7	1017.62301
정통망이용	인터넷사기	1850.7283	172	1127.83950
	사이버금융범죄	1225.3736	18	682.70157
	개인 위치정보침해	1350.0000	1	.
	사이버저작권침해	1065.0000	8	873.90748
	합계	1760.0603	199	1104.12023
불법컨텐츠	사이버음란물	2690.5621	5	1522.59261
	사이버도박	1905.0626	11	1001.31514

분이 있다.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1243.4209	44	975.08144
	합계	1485.3170	60	1104.37427
기타	기타	2026.0310	17	1247.55741
	합계	2026.0310	17	1247.55741
합계	해킹	1483.5260	6	1082.43934
	서비스거부공격	840.0000	1	.
	인터넷사기	1850.7283	172	1127.83950
	사이버금융범죄	1225.3736	18	682.70157
	개인 위치정보침해	1350.0000	1	.
	사이버저작권침해	1065.0000	8	873.90748
	사이버음란물	2690.5621	5	1522.59261
	사이버도박	1905.0626	11	1001.31514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1243.4209	44	975.08144
	기타	2026.0310	17	1247.55741
	합계	1708.6738	283	1114.67880

주: 1) 관계자 조사 시간을 제외한 후 소요시간임.

2) 악성프로그램 사건 유형은 모집단 자체의 크기가 작아 표본 추출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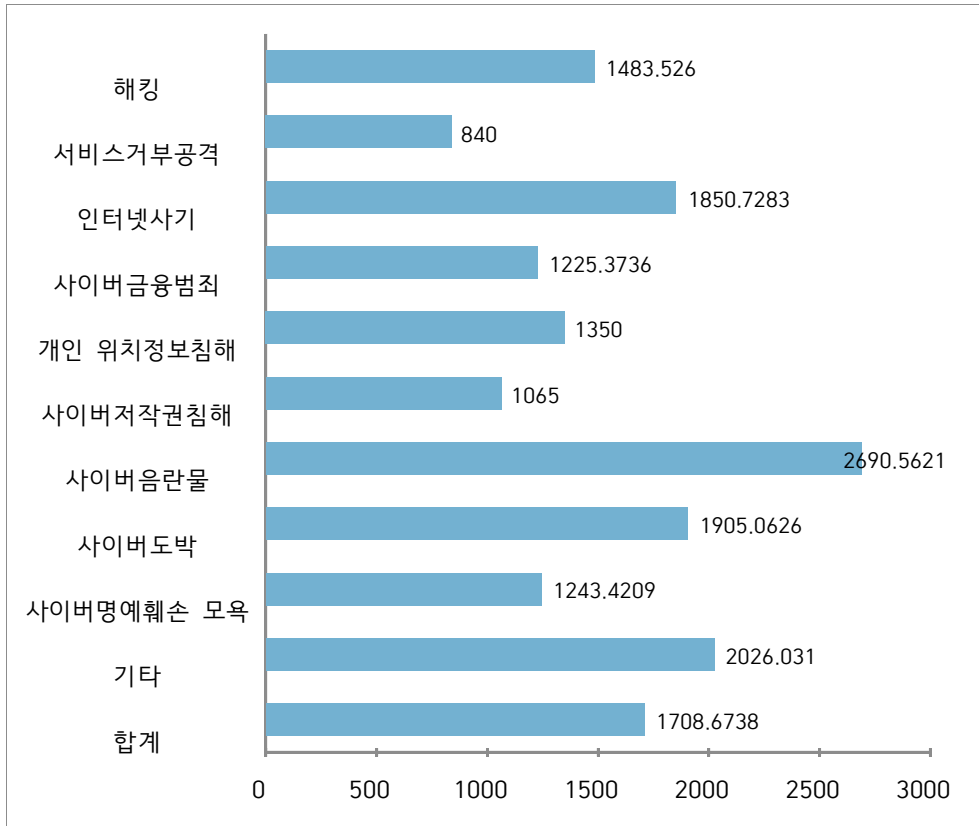
3) 각 케이스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해킹(1483.52분) 등 정통망침해범죄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그림 3>에서 보듯이 여타 유형의 사이버사건에 비해 뚜렷하게 큰 처리 소요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거나 사회경제적 피해규모가 매우 큰 해킹사건의 등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단위 이상의 사이버팀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통망침해범죄는 그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는 팀 수사관 인력 규모 및 분석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증거물 분석과 추적수사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력을 갖지 못한 점이 또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사이버사건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정식접수사건, 분)



제4장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산출과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 추정에 앞서, 사건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시간 등을 고려한 수사관의 업무량 모형 등 적정 업무량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상담·접수에서부터 본 수사 단계를 거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일정 기간(연간) 내 가용 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식 (1)

단,

$L_y = 1$ 일 기본 근무시간(L_h) \times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bar{h} = \frac{\sum h_i}{N}$, 여기서 $h_i =$ 개별 사건 i 의 처리 소요시간, $N =$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사이버팀 수사관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1건당 평균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범죄 유형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적 업무량 추정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범죄 유형과 규모 등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 식 (2)

단, 여기서 \bar{h}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bar{h} = \sum(\text{유형별 건수} \times \text{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div \sum \text{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위의 식에서 \bar{h} 을 다시 써보면, $\bar{h} = \frac{\sum n_i \bar{h}_i}{\sum n_i}$,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bar{h}_i = 유형 i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식 (1)의 기본 모형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W_n = L_y \div \bar{h}$). 그러나 \bar{h} 의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은 \bar{h} 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

($\sum h_i$) 이를 전체 사건(N)으로 나눈 것이다($\bar{h} = \frac{\sum h_i}{N}$). 반면에 식 (2)에서의 \bar{h}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구해진다.⁹⁾

9) 기본모형 중의 식 (2)는 업무 난이도가 반영된 사건유형에 기초하여 적정 업무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업무배당과 성과측정 등에 합리적이다. 적정 업무량 기본모형의 구축과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34-35쪽;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

2. 사이버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개인별 적정 업무량과 같이 각 경찰관서 사이버팀의 경우에도 팀별 인원 수 및 팀의 연간 기본근무시간, 사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 업무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즉, 수사관 정원(L_p)이 l 명 ($L_p=l$) 인 P지방에 A경찰서 사이버팀 (팀원 수= m 명), B경찰서 사이버팀 (팀원 수= $l-m$ 명)으로 두 팀이 편성되었을 경우,

A사이버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k, j=m}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j = 수사관, n_{ij} = 수사관 j 가 담당한 유형 i 사건의 처리 건수, mL_y = A사이버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사이버팀은
$$\sum_{i=1, j=m+1}^{i=k, j=l}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m+1}^{i=k, j=l} n_{ij} \bar{h}_i \leq (l-m)L_y,$$

여기서 $(l-m)L_y$ = B사이버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예컨대, 수사관 정원이 30명 ($L_p=30$)인 P지방에서 사이버팀 전체 인원이 20명($j=20$)인 A경찰서 사이버팀이 6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여 운영할 경우,

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124-125쪽;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 57-61쪽.

A경찰서 사이버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6, j=20}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6, j=20} n_{ij} \bar{h}_i \leq 20L_y$ 이다.

여기서 $20L_y =$ A사이버팀(2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또한,

B경찰서 사이버팀 적정업무량(건수)은 $\sum_{i=1, j=21}^{i=6, j=30}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21}^{i=6, j=30} n_{ij} \bar{h}_i \leq 10L_y$,

여기서 $10L_y =$ B사이버팀(1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갖는 사건 발생을 고려할 때, 팀원 간 또는 팀 간 형평성을 갖는 정밀한 사건 배당 또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당 준칙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접수된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사건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건을 사이버팀 팀원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sum n_{ia} \bar{h}_i = \sum n_{ib} \bar{h}_i \leq 1 \text{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즉 사이버팀 내 수사관(j)으로 a, b가 근무할 경우, 수사관 간에 유형별 평균처리 소요시간(\bar{h}_i)을 고려한 업무량이 같도록 배당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별 처리소요시간의 합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 각 사이버팀별 사건배당은, 현재의 운영체계 아래서는 매우 어렵지만 사건 처리 업무량의 팀 간 장기적인 형평성 추구와 인력 재배치 시각에서 본다면, 위의 사이버팀별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의 제약조건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을 만족하는 업무량 분담 기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산출

1. 기본 모형(Basic Model)

사이버팀 필요인력의 산출을 위한 인력표준안 설계에는 앞선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L_y),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등의 개념과 기본 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전체 규모, 즉 경찰청(P) 전체 수준에서 일선 사이버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_p)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_p = \text{경찰청 연간 사이버팀 사건처리 소요시간 } (H_p) \div \text{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 식 (3)

단, $H_p = \text{사건수}(N_p) \times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위의 모형에 따라서 경찰청(P)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필요인력(L_p)을 산출해 보면, 우선 정식접수사건 부분에서 정식접수사건 수(N_{p1})는

최근 2년(2015-2016) 간을 기준으로 평균 148,877건이다¹⁰⁾. 또한 정식접수 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1)은 앞선 추정결과에서 1765.99분이다. 따라서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8,877건(N_{p1}) \times 1765.99분(\bar{h}_1) = 262915293.23분이다.

한편 임시접수 후 반려사건 부분에서, 반려사건 수(N_{p2})는 최근 2년(2015-2016) 간을 기준으로 평균 101,903건¹¹⁾이며, 상담 후 반려사건 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2)은 앞선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70.02분이다, 따라서 반려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01,903건(N_{p2}) \times 70.02분(\bar{h}_2) = 7135248.06분이다.

위의 정식사건 + 반려사건을 합한 사건들의 처리에 필요한 총 소요시간은 270050541.29분이다.

(=정식접수사건 262915293.23분 + 반려사건 7135248.06분)

그에 따라 경찰청(P)의 일선 사이버팀 기본 필요인력(L_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의 경우 2015-2016년 2년간 연평균 2,000시간¹²⁾을 적용한 결과,

$L_p = \text{정식+반려사건의 사건처리 총 소요시간} (N_{p1} \times \bar{h}_1 + N_{p2} \times \bar{h}_2) \div 2,000\text{시간}(L_y) = 2,250.42\text{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정식접수사건 2015년 144,679건, 2016년 153,075건 발생, 2년 평균 148,877건

11) 반려사건 2015년 91,005건, 2016년 112,801건 발생, 2년 평균 101,903건

12) 최근 2년(2015~2016) 평균 2,000시간(L_y)= 1일 8시간(L_h) \times 연평균(2년) 기본근무일 250일(L_d). 2010~2016년간 기본근무일수는 2010년 251일, 2011년 249일, 2012년 252일, 2013년 249일, 2014년 249일, 2015년 251일, 2016년 249일이었다.

2. 표준 모형(Standard Model): 업무 손실의 고려

한편 위의 기본 모형에서는 연가·교육 등으로 인한 수사관의 업무손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팀 수사관들은 <표 12>에서 보듯이, 연간 근무기간 중 대부분이 연가·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이버팀 수사관들의 1인당 업무손실 시간(\bar{h}_c)은 교육 6.17일, 연가 9.94일 등 연 평균 16.11일(= 128.88시간 = 7732.8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사이버팀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 시간(2016년)

단위: 일(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교육	254	0	120	6.17	11.386
연가	272	0	120	9.94	8.371
평균				16.11	

교육·연가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 시간(128.88시간=7732.8분)을 차감한 표준 모형(Standard Model)에서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재산정하면,

$$2,000\text{시간} - 128.88\text{시간} = 1,871.12\text{시간} = 112267.2\text{분} \text{으로서,}$$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 1,871.12시간 = 112267.2분으로 수정된다.

$$\text{단, } L_{yc} = \text{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text{업무손실시간}(L_c)$$

표준모형(업무손실 고려)에서의 필요인원을 재산정해 보면,

경찰청(P)의 사이버팀 표준 필요인력(SL_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 1,871.12시간 = 112267.2분을 적용한 결과,

정식+반려사건처리 총 필요시간 ($N_{p1} \times \bar{h}_1 + N_{p2} \times \bar{h}_2$) ÷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 2,405.42명(표준 필요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ext{단, } N_{p1} \times \bar{h}_1 + N_{p2} \times \bar{h}_2 = 270050541.29\text{분, } L_{yc} = 112267.2\text{분}$$

제3절 사이버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1.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은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일 기본 근무시간(L_h) ×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 L_y 로서

최근 2년 평균으로 250일=2,000시간=120000분으로 산출된다.

단, L_h = 1인당 1일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L_d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일수

사이버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W_n)을 처리사건 건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정식접수사건 기준)은,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120000분 ÷ 1765.99분 = 67.95건으로 산출된다.

2.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기본 모형에서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67.95건은 업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1,871.12시간 = 112267.2분을 적용하면,

1인당 적정 업무량(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112267.2분 ÷ 1765.99분 = 63.57건
이다(표준모형 1).

그러나 위의 모형(표준모형 1) 내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모형 1은 반려사건을 고려하여 보다 완결될 필요가 있다(업무손실 외에, 반려사건 고려).

앞서 보듯이 최근 2015-2016년간 연평균 사이버사건 수는 <표 13>에서 보듯이 정식접수 148,877건, 반려 사건 101,903건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은 0.68로서, 이것은 정식접수 사건을 1건을 처리할 때, 평균적으로 약 0.68건의 반려사건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사이버팀의 반려사건 비율

년도	정식접수 건수(A)	상담반려 건수(B)	반려비율(R)= B/A	합계(A+B)
2015	144,679	91,005	0.63	235,684
2016	153,075	112,801	0.74	265,876
평균	148877	101,903	0.68	250,780

이러한 반려사건 비율 0.68은 <표 14>에서 보듯이 경제팀의 0.2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경제팀의 반려사건 비율

년도	정식접수 건수(A)	상담반려 건수(B)	반려비율(R)= B/A	합계(A+B)
2014	522,637	151,700	0.29	674,337
2015	514,897	137,110	0.27	652,007
평균	518,767	144,405	0.28	663,172

자료: 정웅,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6.

사이버팀 반려사건 비율 0.68은 표준모형 1에서 1인당 적정 업무량(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 63.57건을 처리하더라도 정식접수에 부수되는 43.22건의 반려사건을 추가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2건 = 63.57 × 0.68(R)]

반려사건을 고려하면 1인당 적정 업무량 = 106.79건이다(표준모형 2). 즉, 106.79건 = 63.57건(정식접수) + 43.22건(반려).

단, 반려사건 업무량(3028.42분 = 43.22건 × 70.07분)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 시간(112267.2분)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산출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표준 필요인원(2,405.42명)은 정식 및 반려사건 모두와 연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112267.2분)을 고려하여 산출된 인원이다. 1인당 적정 업무량 역시, 초과근무 없이 연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112267.2분) 이내에서, 연간 정식 및 반려사건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 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함께 처리하면 된다.

이처럼 초과근무가 없다는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될 수 있다(표준모형 3). 즉, 1인당 적정 업무량(건수)은 정식접수사건을 62건으로 축소하고, 반려사건은 42.16건을 처리하여 연간 총 104.16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기준의 수사관 1인당 업무량은 112445.53분이다.

$$\begin{aligned} \text{즉 1인당 적정 업무량(건수)} &= 62\text{건(정식)} + 42.16\text{건(반려)} \\ &= 104.16\text{건이며, 시간기준 업무량은 } 112445.53\text{분이다.} \end{aligned}$$

여기서 104.16건을 시간기준으로 볼 때,

$$\begin{aligned} \text{정식접수 } 109491.38\text{분} & (=62\text{건} \times 1765.99\text{분}) + \\ \text{반려사건 } 2954.15\text{분} & (=62\text{건} \times 0.68 \times 70.07\text{분}) \end{aligned}$$

= 112445.53분이며, 이는 연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112267.2분)에 근접한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전국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건수)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는 사건의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현장의 업무 흐름 즉 수사 프로세스 시각에 기초하였다. 아울러 이 같은 수사 업무의 조사 설계에 반영된 경찰서 사이버팀 현장 업무의 특징은,

① 민원사건 조사 외에도 인지사건의 경우 첩보활동에서도 출발하는 긴 수사 업무 단계를 포괄하고,

② 온라인 (사이버)수사 외에 오프라인 수사를 포괄하는 폭 넓은 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내근(조사) 외에도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위한 현장출동과 디지털 증거물 분석, 피의자에 대한 외근 추적수사 등 깊이 있는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 업무의 특징은, 각 세부 업무들의 업무량 크기를 떠나 적어도 그 업무 구조의 틀에서 볼 때,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팀 수사 업무의 흐름과 틀을 기초로 실제 세부 업무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 첩보활동 131.66분, 민원상담 60.90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조사가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에 157.4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수사 단계에서 외근 업무인 통신자료요청 74.46분,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57.32분, 영장신청 85.87분, 통신수사 139.73분, 수사자료 분석 132.02분, 수사보고서작성에 132.81분 등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수사 단계에서 외근 업무로서, 출동준비 91.17분, 현장출동 및 증거물확보 121.50분, 기타외근증거수집 169.74분, 신변확보를 위한 영장신청 및 외근추적수사에 각각 77.31분, 111.34분이 소요되었다. 이 밖에 디지털증거분석(자체)이 42.60분, 팀장의 수사지휘가 75.70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업무로서 송치 전 서류정리에는 185.98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이 처리하는 사이버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 사이버사건의 경우 관계자 조사업무가 다른 본 수사 단계에서의 세부업무들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자 조사시간(530.51분)을 단순 총합 시간(2,296.5분)에서 차감하여, 사건 당 평균 수사 소요시간을 1765.99분으로 조정하였다(정식접수사건 기준).

한편 사이버팀의 임시접수 후 반려사건에 대한 건당 평균 업무량은 경제팀의 상담처리 소요시간 46.6분에 비해 다소 큰 70.02분으로 추정되었다.

사이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음란물 범죄유형이 가장 큰 2690.56분이 소요되고, 기타 유형에서 2026.03분, 사이버도박 1905.0분, 인터넷사기 1850.72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1483.52분) 등 정통망침해범죄는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여타 유형에 비해 큰 소요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량 추정에 기초하여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필요인력(L_p)을 산출해 보면, 우선 정식접수사건 부분에서, 정식접수사건 수

(N_{p1})는 최근 2년(2015~2016) 평균 148,877건, 정식접수 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1) 1765.99분으로서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8,877건(N_{p1}) \times 1765.99(\bar{h}_1) = 262915293.23분이다.

한편 임시접수 후 반려사건의 경우, 반려사건 수(N_{p2})는 최근 2년(2015~2016) 평균 101,903건, 반려사건 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2)은 70.02분으로서 반려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01,903(N_{p2}) \times 70.02(\bar{h}_2) = 7135248.06분이다.

위의 정식사건과 반려사건을 합한 사건들의 처리에 필요한 총 소요시간은 270050541.29분이며,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전국 일선 사이버팀의 필요인력(L_p)은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연간 1인당 업무손실 시간(128.88시간=7732.8분)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 필요인원을 재산정해 보면, 표준 필요인원(SL_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W_n)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은 67.95건(정식접수사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begin{aligned}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 120000분 \div 1765.99분. \end{aligned}$$

그러나 기본 모형에서의 적정 업무량(W_n)= 67.95건은 업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1,871.12시간= 112267.2분을 적용하면, 1인당 적정 업무량(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모형 1).

$$=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 112267.2분 \div 1765.99분.$$

위의 모형(표준모형 1)은 업무손실을 고려하였지만 반려사건까지는 포함되지 못하여 여전히 불완전한 모형이다. 따라서 표준모형 1은 반려사건을 고려하여 보다 완결될 필요가 있다.

최근 2년간(2015-2016) 연평균 사이버사건 수는 정식접수 148,877건, 반려 사건 101,903건으로 나타나 정식접수 1건당 반려건수 비율(R)은 0.68이다. 이러한 반려사건을 고려하면 1인당 적정 업무량 = 106.79건이다(표준모형 2).

$$= 63.57\text{건(정식접수사건)} + 43.22\text{건(반려사건)}.$$

단, 반려사건 업무량(3028.42분=43.22건×70,07분)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 시간(112267.2분)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산출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표준 필요인원(2,405.42명)은 정식 및 반려사건 모두와 연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112267.2분)을 고려하여 산출된 인원이다.

1인당 적정 업무량(건수 기준) 역시, 초과근무 없이 연간 1인당 표준근무시간(112267.2분) 이내에서, 연간 발생한 정식 및 반려사건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 사건을 일부 축소하고 그 대신 잔여 시간을 이용하여 반려사건을 함께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따르면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될 수 있다(표준모형 3). 즉,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정식접수사건을 62건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반려사건 42.16건을 추가로 처리하여 연간 총 104.16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기준의 수사관 1인당 업무량은 112445.53분이다.

여기서 1인당 적정 업무량(건수) = 62건(정식) + 42.16건(반려) = 104.16건이며, 시간기준의 업무량은 112445.53분이다.

여기서 104.16건의 처리시간 112445.53분은,

정식접수 109491.38분(=62건×1765.99분) +
반려사건 2954.15분(=62건×0.68× 70.07분)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이는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112267.2분)에 근접한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2016년 7월 25일 현재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이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른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원(L_p)은 2250.42명으로 나타났다(기본 모형). 또 업무 손실 시간을 고려한 필요인원(SL_p)은 2405.42명으로(표준 모형),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써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¹³⁾

위 모형에서는 1일 기본근무시간($L_b=8$ 시간)에서 출발하여 부족인원이 산출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이버팀에서도 여타 부서와 같이 기본근무시간외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간 가용 근무시간의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팀 부족정원(1470.42명)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관을 충원하도록 하되, 부족정원의 충원 전까지는 이러한 초과근무 운용과 함께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증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팀에서는 사이버상의 소액 사기사건 또는 소소한 각종 민원사건까지 처리되면서 외부에서 볼 때 업무가 일견 단순하게 비춰질 수

13) 예컨대 경제팀 연구(2012)에서 경제팀 필요인원은 4,808명으로서, 이를 경제팀 정원(2,821명) 및 현원(2,735명)에 대비한 부족인원은 각각 1,987명 및 2,073명,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70.4% 및 75.8%였다. 이를 사이버팀 부족인원 비율과 비교할 때 사이버팀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 있지만,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가 매우 방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이버 수사 업무의 고유한 특징과 현재의 과도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그에 따라 현재의 사이버팀은 기존 수사부서 내에 매몰되어, 그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기사건 등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경제팀” 수준에 머물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타 수사기능의 업무까지 追隨的으로 수행할 위험성도 상존한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통신)추적수사팀 운용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14) 그나마도 사이버팀은 2016년 7월 25일 현재 전국 경찰서(251개서)에 모두 운영되지 못하고 1급서(142개서) 중 139팀, 2급서 4팀 등 143개팀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경찰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2015. 12.

이윤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연구보고서), 경찰청 미간행 보고, 2013. 9.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a.

정웅,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b.

정웅,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5.

정웅,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6.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2. 논문 및 기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 현장 대응역량 강화”, 2016.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6년 상반기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업무량분석”, 2016. 7.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결과”, 2016. 1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6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017. 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현황(2011-2016)”, 2017. 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국 사이버경찰 인력”, 2017. 7. 29.
- 금융감독원, “해외 주요국의 금융사기 피해실태-대응조치 및 시사점(보도자료)”, 2015. 6. 11.
-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金融法研究, 제12권 제1호, 2015.
-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5.
- 정웅, “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2015.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 Pickett, K.H. Spencer and Jennifer M. Pickett,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2. 논문 및 기타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7, Issue 4, 2010.

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yber Crime," <https://www.fbi.gov/investigate/cyber>(검색일: 2017. 1. 20).

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 <https://www.fbi.gov/investigate/cyber/national-cyber-investigative-joint-task-force>(검색일: 2017. 2. 20).

[부 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 <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업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

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3장 삭제 <2015.6.22.>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2015.6.22.>

제20조 삭제 <2015.6.22.>

제21조 삭제 <2015.6.2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 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8., 2016.3.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16.3.22.]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들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 ③ 영업양수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3.22.>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16.3.22.]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16.3.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16.3.22.]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3.22.>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5.28.>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 [본조신설 2012.2.17.]
[제목개정 2016.3.22.]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야 한다. <개정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

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2.>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 삭제 <2011.3.29.>

제33조의2 삭제 <2011.3.29.>

제34조 삭제 <2011.3.29.>

제35조 삭제 <2011.3.29.>

제36조 삭제 <2011.3.29.>

제37조 삭제 <2011.3.29.>

제38조 삭제 <2011.3.29.>

제39조 삭제 <2011.3.29.>

제40조 삭제 <2011.3.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 <2014.5.28.>
 - ② 삭제 <2014.5.28.>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

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8 삭제 <2008.2.29.>

제44조의9 삭제 <2008.2.29.>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7.7.26.>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28.>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본조신설 2012.2.17.]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3 삭제 <2012.2.1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7., 2015.12.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3. 인증서 발급·관리
4. 인증의 사후관리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17.7.26.>
-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2.1.>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15.12.1.]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12.1.>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중건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2.2.17.>]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2.>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3에서 이동 <2012.2.17.>]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

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경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와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과피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9.4.22.]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
 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폐지·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2010.3.22.>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12.21.>]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07.12.21.>]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07.12.21.]

[제목개정 2015.6.22.]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12.21.>]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중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2007.12.21.>]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5.28.>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28., 2017.7.26.>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7.26.>

[본조신설 2007.12.21.]

[중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2007.12.21.>]

제59조(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07.12.21.]

[중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2007.12.21.>]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중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2007.12.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중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12.21.>]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12.21.>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7.7.26.>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2의2. 사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6.3.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

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5.28., 2016.3.22.>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경우
 - 5의2.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1. 삭제 <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2.17.>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68조 삭제 <2010.3.22.>

제68조의2 삭제 <2015.6.22.>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제69조의2(고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본조신설 2012.2.17.]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1. 삭제 <2016.3.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

- 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2014.5.28.>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다액을 증액한 자
-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 ⑤ 삭제 <2017.3.14.>
 - ⑥ 삭제 <2017.3.14.>
 - ⑦ 삭제 <2017.3.14.>
- [전문개정 2008.6.13.]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8항·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㉟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통칙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급)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 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0.15.>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본조신설 2011.11.14.]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5.22.]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

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 방법, 파기절차·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제목개정 2014.10.15.]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

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본금)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분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분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분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겸업제한)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1.27.>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7.4.1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4.10.15.>

[제목개정 2013.5.22.]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을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3.29.>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의2(예비인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4.10.15.>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제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0.15.>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6장 보칙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①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10.15.>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12.31.>
 2. 삭제 <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11.14.]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검직하게 하거나 검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4.18.>
- [전문개정 2013.5.22.]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발 간 등 록 번 호
11-1332522-000071-01

2017-07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2018년 9월 발행

발 행 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 행 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